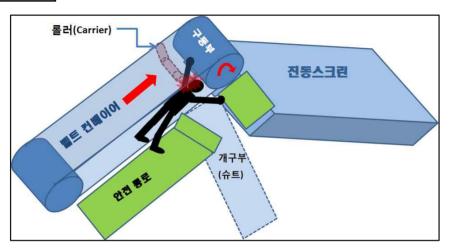
운전중인 컨베이어에 신체일부가 감김

재 해 개 요

피재자가 건설폐기물 운반용 벨트 컨베이어에서 이물질 제거작업을 하던 중 컨베이어의 벨트와 구동 롤러(Carrier) 사이에 왼팔과 목이 감기면서 사망한 재해임

재 해 사 진



[재해발생 상황도]



[재해발생 현장]

재해발생 상황

O 피재자가 휴식을 위해 작업중이던 컨베이어 끝부분(구동부)에서 중앙으로 돌아오기 위해 개구부(슈트)를 건너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컨베이어의 벨트와 롤러 사이에 왼팔과 목이 감기면서 질식으로 사망한 재해로 추정함

재해발생 원인

O 컨베이어 측면 작업자 안전통로의 미설치

- 컨베이어 측면으로 근로자가 통행할 경우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나, 통로상에 개구부(폭 70cm)가 있는 등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통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음.

O 컨베이어 비상정지장치 미설치

- 이물질 선별작업을 위해 운전중인 컨베이어의 측면에서 작업시 근로자의 신체 일부가 말려드는 등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및 비상시에는 즉시 컨베이어의 운전을 정지시킬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나, 비상정지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음.

동종재해 예방대책

O 작업자 안전통로의 설치

- 컨베이어 측면으로 근로자가 통행할 경우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함.
 - ※ 통로상에 있는 개구부는 제거하거나,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건널다리를 설치하시기 바람.

O 컨베이어에 비상정지장치 설치

- 컨베이어에 근로자의 신체의 일부가 말려드는 등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및 비상시에는 즉시 컨베이어 등의 운전을 정지시킬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함.